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」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3일

상 주 시



1. 공고명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(명부 작성)
2. 안전점검 수행 대상: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
3. 신청자격 (모두 해당)
 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 진단전문기관(‘토목’, ‘건축’ 또는 ‘종합’ 분야 등록 업체)
 - 나.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(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)
4. 모집기간 및 방법
 - 가. 공고기간: 2024. 2. 14.(수) 09:00 ~ 2024. 3. 6.(수) 18:00(21일간)
 - 나. 공고방법: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 - 고시공고)
 - 다. 접수기간: 2024. 2. 28.(수) 09:00 ~ 2024. 3. 6.(수) 18:00
 - 라. 제출방법: 우편제출 및 이메일(PDF파일) 제출
 -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 - 우편물이 늦더라도 이메일이 기간내 도착시 인정
 - 마. 제출장소
 - 우 편: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, 상주시청 건설과(제1별관, 1층)
 - 이메일: sym9610@korea.kr
 - 바. 등록명부 공고: 2024. 3. 11.(예정)

5. 제출자료

- 가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
- 나.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.
- 다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
- 라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.
- 마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

6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모집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고 지정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응모업체가 세부 직무 분야별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또는 추가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수행기관 명부관리 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 후 다음 모집공고에 의한 등록명부 공개 게시까지 유효(1년 단위)합니다.
- 라. 등록명부는 상주시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활용·적용 될 수 있습니다.
- 마.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설과(☎054-537-75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
2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 끝.